

2025년 03월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미도달 계약 명세

1. 개요

항상 비엠펙터블유폴이넨설서비스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인 대출 계약에 대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아래 4. 계약에 해당하는 고객님의 여신(연대보증 포함)계약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상 조건

계약종류	금융리스, 할부금융, 대출
최초 대출 금액	3천만원 미만
결제일자	5일

3. 공시 내용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025.04.09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할부금융, 대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금융리스)	자동차리스이용약관 제 21조 등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분할 납부 권리 상실 및 대출잔액 일시청구, 차량(바이크) 반납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	차량(바이크) 매각 후 채무조정 요청서 제출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거래의 정상화를 신청하여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아 원리금을 입금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4. 미도달 계약 명세

계약번호	고객명	주소	1차 발송일자	2차 발송일자	결과
2205-002239-4-001	김*식	대구 동구 경안로109길32,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2304-002420-4-001	이*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62번길 12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2101-003648-4-001	백*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11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2107-013208-4-001	이*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3길 25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2304-006079-4-001	주식회사 강*티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29번길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1908-444905-4-001	강*호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1042번길14-1,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2208-001028-4-001	나*웅	서울 서대문구 평지길 26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2106-004134-4-001	김*재	부산 동구 중앙대로 357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2105-010726-4-001	김*민	경기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4-1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2306-017652-4-001	김*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2로 21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2304-006079-4-001	나*복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29번길 *****	2025-03-20	2025-03-24	미배달

2025년 3월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미도달 계약 명세 결제일

항상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인 대출 계약에 대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 법률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 첨부에 해당하는 고객님의 여신(연대보증 포함)계약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실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입